

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일

발 의 자 : 임희도 의원

1. 제안이유

하남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,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장애인체육회 인건비 관련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준용(안 제8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제1호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,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운영비 지원) 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8조(운영비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1호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,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 <p>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